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19 선고 2021가단11283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

담당변호사 이승량

변 론 종 결 2022. 4. 5.

판 결 선 고 2022. 4. 1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0. 9. 14. 접수 제11975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해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매절차의 종료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2. 판단

가.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57904 판결,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).

나. 을 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2021. 11. 11. 매수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원고가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상현

[별지]

목 록

1. 경기도 남양주시 대 751㎡

2. 경기도 남양주시 동

[도로명주소 : 경기도 남양주시]

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형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126.85㎡.끝.

